

#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한

##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 
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 
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  
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 
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「학교환경 진흥법」 개정으로 인  
한 조례상 근거 규정 명칭 변경과 생태전환교육 운용상  
구체적 내용 추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
- 특히 본 조례는 「환경교육 진흥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농촌유학(도농교육교류협력) 등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시 ‘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청과의 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포함하고, 이들 기관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.
  
- 학생의 환경학습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의 신설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.
  
- 또한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사용·운용의 명시적 근거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법령상의 기본 원칙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입니다.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.
  
- 동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 
「학교교육 진흥법」의 개정사항 반영,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시 “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청과의

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” 포함하도록 한 규정,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진출 근거 규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